

# 개혁주의학술원 운영규정

< 2015.8.18., 일부개정 >

**제1조(명칭 및 소재)** 본원은 “개혁주의학술원”(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, 약칭 KIRS) 이라 칭하고, 고신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)에 둔다.  
<개정 2015.8.18.>

**제2조(목적)** 본원은 대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학문 및 건강한 교회건설을 위한 제반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18.>

**제3조(사업)**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1. 국제, 국내 학술활동 및 국제학술교류
2.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교육 및 출판활동
3. 「개혁주의 전문도서관」 운영
4.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조직)** ① 본원은 원장, 책임연구원, 행정간사,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(단, 행정간사 및 행정조교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학 일반직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).

② 본원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, 학술위원, 편집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원장)** 본원을 대표하고, 업무 전체를 총괄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책임연구원)** 본원의 학술 업무를 총괄하고,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(학술위원회)** ① 본원의 원활한 학술 및 연구 활동 진작을 위해 학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의 분과를 둔다.

1. 연구분과
2. 교육분과
3. 섭외분과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책임연구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그 외의 위원은 개혁신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고, 간사는 행정간사가 맡는다.

**제8조(행정간사)** 본원의 학술 업무와 부대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사무의 실무를 담당한다.

**제9조(행정조교)** 본원의 학술 업무, 행정 및 사무 업무를 보조한다.

**제10조(고문)** 본원의 원활한 학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11조(편집위원회)** ① 본원의 정기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책임연구원이 되고, 그 외 위원은 학문적 능력을 검증받은 개혁신학자를 원장이 위촉하며, 간사는 행정간사가 맡는다.

③ 편집 규정 및 연구 윤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2조(후원이사회)** ① 본원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후원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, 부이사장 1명, 총무이사 1명, 부총무이사 1명, 서기이사 1명, 회계이사 1명, 감사이사 2명과 당연직 이사로서 원장과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, 그 외의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④ 이사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3조(개혁주의 전문도서관)** 개혁주의 전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학교의 문헌정보관이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.

**제14조(재정)** 본원은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후원금은 대학교의 교비회계로 귀속된다.

**제15조(회계연도)** 본원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2월 11일에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5년 8월 18일에 시행한다.